

국내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2018. 9. 1.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이하"회사" 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국내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입니다.
- ②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등)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의 개정 시 적용기준은 개정 시점 이후부터 계약된 고객에 한하며, 개정 전 계약고객에 소급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저기통신설비: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2. 전용회선: 사용자가 희망하는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회선
3. 전용계약: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사용계약"이라 합니다.)
4. 신청자: 회사와 전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
5. 이용자: 회사와 전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요금납입책임자
6. 해제: 이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해지: 이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공동이용: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9. 타인이용: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10. 상호접속: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속 하는 것
11. 혼합이용: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이용(분할이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이용(교차이용)하는 것
12. 가입구역 및 준가입구역 : 국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계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지역을 가입구역이라 하며, 전화가입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전화 가입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을 준가입구역이라 함
13. 동일가입구역: 동일통화권내에 있는 지역
14. 수용구역: 동일 가입 구역 안에 전용회선의 양측이 설치된 경우 전화교환 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이며,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전화국 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는 수용구역 내로 하며 그 이외는 수용구역간으로 구분

- 15. 단말기기: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 16. 회선중단장치(DCE): 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회선과 단말기기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 17. 개통: 고객의 전용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현업이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음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전용서비스
- 2. TV방송전용서비스

제 2 장 계약

제1절 일반전용서비스

제6조 (일반전용 서비스의 구분)

- ①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시내회선: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경우로서 수용구역내와 수용구역간으로 구분
 - 2. 시외회선: 시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외구간에 설치된 전용회선
- ②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단기이용 : 전용회선을 1개월미만 이용하는 것 (제7조 제2호 및 제3호 제외)
 - 2. 장기이용 : 전용회선을 1개월이상 이용하는 것

제7조 (일반전용의 종류와 규격)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하여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외 전용

종류	규격	내용
1.저속급 회 선	2400bps회선	매초당 24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4800bps회선	매초당 48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9600bps회선	매초당 96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중/고속급 회 선	56Kbps회선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64Kbps회선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28Kbps회선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92Kbps회선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56Kbps회선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종류	규격	내용
	384Kbps회선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448Kbps회선	매초당 44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512Kbps회선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768Kbps회선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Mbps회선	매초당 1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544Mbps회선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048Mbps회선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3. 초고속 회선	4Mbps회선	매초당 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5Mbps회선	매초당 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6Mbps회선	매초당 6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8Mbps회선	매초당 8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0Mbps회선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0Mbps회선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30Mbps회선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45Mbps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50Mbps회선	매초당 5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00Mbps회선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55Mbps회선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622Mbps회선	매초당 622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Gbps회선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5Gbps회선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 4M, 5M, 6M, 8M, 10M, 20M, 30M, 50M, 100M 는 Ethernet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② 시내전용

종류	규격	내용
1. 저속급 회선	2400bps회선	매초당 24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4800bps회선	매초당 48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종류	규격	내용
	9600bps회선	매초당 9600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중/고속급 회 선	56Kbps회선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64Kbps회선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28Kbps회선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92Kbps회선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56Kbps회선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384Kbps회선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512Kbps회선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768Kbps회선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024Mbps회선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544Mbps회선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048Mbps회선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3.초고속 회 선	5Mbps회선	매초당 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0Mbps회선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0Mbps회선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30Mbps회선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45Mbps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00Mbps회선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55Mbps회선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622Mbps회선	매초당 622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1Gbps회선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5Gbps회선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 5M, 10M, 20M, 30M, 100M 는 Ethernet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8조 (통신방식의 종류)

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데이터 전송 등 비음성통신
- 2. 전화 등 음성통신
- 3. 팩시밀리전송
- 4. 영상전송
- 5. 사진전송
- 6.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제9조 (일반전용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국내 전 지역입니다.

제10조 (일반사용계약의 단위)

사용계약은 1회선단위로 체결하며, 요금 납입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청)

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신청서(소정양식)
-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 3.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12조 (계약)

- ① 회사는 사용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계약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7조의 고속 및 초고속디지털전용회선의 신청에 대하여는 고속 및 초고속디지털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고속 및 초고속디지털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케이블이 시설되는 경로 등(구내관로, 비트, 콘디트, 덕트 등)의 설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④ 신청자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신청의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 1. 개통예정일
 -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 4.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계약의 제한)

- ① 회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는 계약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사용계약 신청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합니다.
 - 1. 사업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 3. 요금납부 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4. 대표이사 또는 권한 위임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6.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제한하는 때에는 회사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공동이용의 신청)

- ①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 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 관계가 있는 자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 ②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 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 책임자가 됩니다.

제15조 (공동이용관계의 입증)

- ① 회사는 공동이용자 중 부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항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공동이용에 관한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서류를 회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타인이용의 신청)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정보통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이용 신청)

- ① 신청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전용회선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8조 (상호접속의 신청)

- ①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2. 공동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그 밖에 회사가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터통신망 상호간
 2. 시내 및 시외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하는 시내 및 시외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상호접속 하는 시외회선의 경우는 제외)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호접속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
 2. 상호접속방법 및 구성도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 ①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접속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 ②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타인사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기관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8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시외전용회선의 양 단측을 동시에 구내 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한 단측은 공중 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혼합이용의 신청)

- ① 이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 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이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합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측

의 설비는 이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절 TV방송전용서비스

제21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

TV방송전용은 공중파 및 지방TV방송국의 공중파 방송용과 공익사업체의 TV방송중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시간/기간)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1일 중 일정한 시각에 이용을 개시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최소이용 시간은 2시간이며 초과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규격)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하여 제공하는 TV방송전용서비스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Mbps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영상전송 이에 포함되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 회선
2. 155Mbps회선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의 영상전송 이에 포함되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24조 (TV방송전용서비스 계약단위)

TV방송전용계약의 체결단위는 일방향 1회선으로 합니다.

제25조 (TV방송전용서비스 지역)

TV방송전용서비스 제공지역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제26조 (TV방송전용 서비스 취급장소)

TV방송전용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회사 본사에서 취급하며 향후 영업소의 개설시는 취급장소를 회사가 별도 공지합니다.

제27조 (신청)

TV방송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3.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28조 (계약)

- ① 회사는 TV방송전용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계약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③ TV방송전용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TV방송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등의 설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④ 분기이용서비스와 삽입중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회사의 별도 협의에 따라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제한)

- ① 회사는 신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2. 설치장소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 3.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4. 사업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5. 대표이사 또는 권한 위임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6.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 1항의 계약보류 사항이 해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3 장 설 치 및 개 통

제30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 ① 이용자측의 단말기기와 회선종단장치(DSU, CSU, CODEC등. 이하 "단말기기 등")는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단말기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소
 - 2. 공해방지, 방재, 교통관제, 의료, 공항관리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장소
 - 3.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장소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 ① 이용자측의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는 이용자가 전담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 등의 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2조 (전용회선의 개통)

-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계약합니다.
- ②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개통일은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전용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신청 계약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재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33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회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구내교환설비는 제외)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 후에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34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사용자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35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구내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의한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전화 번호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함)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7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연장)

-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해지

제38조 (계약의 변경 및 갱신)

- ① 이용자는 전용계약사항 중 다음 2항에서 5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계약의 변경 신청시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공동 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3.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
 4. 설치장소 변경
 - 가. 구내설변: 같은 구내에서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 나. 구외설변: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5. 이용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 ③ TV방송전용계약의 변경 신청시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이용개시 및 종료 예정 년, 월, 일, 시(단, 시간에 대한 변경사항은 TV방송전용계약의 변경신청시 적용)
 3. 설치장소 변경
 - 가. 구내설변: 같은 구내에서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 나. 구외설변: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4. 기타 회사가 업무 취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사용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서비스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
 4. 관계법령,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가 금지되거나 폐지된 경우

제39조 (계약사항의 변경제한)

회사는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및 일시중지 및 재개)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

2. TV방송전용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매매 또는 대여할 경우

3. 요금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 내용 확인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제공 중지를 연기하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 ⑤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⑥ 제5항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은 최소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이용자가 일시중지 서비스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⑧ 회사는 이용자가 제5항에서 정한 일시중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서비스제공을 재개 합니다.
- ⑨ 회사는 일시중지 중인 서비스의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⑩ 서비스 일시중지 시 월 사용료의 1/2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일반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사용계약을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개통예정일 10일전까지 해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해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3조(계약의 제한)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40조 제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통지해 드린 중지기간 이내에 이용자가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요금 할인을 받는 장기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해지되는 경우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드린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드리지 아니하고 납입 최고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TV방송전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영상전용계약 및 TV방송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TV방송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년에 3회이상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
2.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 후 중지 기간 내에 그 중지 사유를 해소 하지 않은 경우
- ③ 이용자가 TV방송전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해제 및 해지 1개월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잔여 기간에 대한 회선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성립됩니다.

제 6 장 요금

제43조 (요금 등의 구분)

- ① 전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치비: 전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계약 등을 한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2. 회선이용료: 전용회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기기이용료: 회사로부터 단말기기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4. 해제료: 사용계약 승락후 개통일 이전에 서비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준비에 따른 비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
 5. 할인반환금: 요금 할인을 받은 장기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44조 (장기이용요금)

- ① 요금 중 장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치비: 전용회선의 이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계약 등을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2. 회선이용료: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 (이하 "일할계산"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② 장기이용자가 개통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이용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5조 (단기이용요금)

요금 중 단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장치비: 장기이용요금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2. 회선이용료: 첫째날은 장기이용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이용월액의 3.33% (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이용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이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6조 (TV방송전용 이용요금)

TV방송전용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영상전용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2. TV방송전용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시간,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3. 제1호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4. 제1호의 년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선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47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③ 전용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계산합니다.

제48조 (요금 등의 감면)

- ① 회사가 전용서비스 요금 등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에는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대한 장치비
 2. 회사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이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군사, 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3.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회사가 지원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4.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회선의 경우
 5. 회사가 체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인명, 재산의 위험 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전담기관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요금등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율 및 적용기준등은 [별표 제 1호]와 같습니다.
- ④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 합니다.

제49조 (요금 등의 할인)

- ① 회사가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 ② 할인은 장기이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감면 받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0조 (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입 요금을 반환 또는 감액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합니다.
- ③ 회사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요금이 월액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동의하시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요금납입책임자)

- ①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52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전용회선 이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월의 말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가. 서비스(장기이용)에 의한 요금
 - 나. TV방송전용서비스에 의한 요금
 - 다. 기기이용료
2.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가. 단기이용에 의한 요금
 - 나. 장치비 및 이용자부담 시설비
 - 다. 요금월의 중도에 이용계약의 해지,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 그 요금 월까지의 요금 및 미납요금 등
 - 라. 일할계산된 요금 등

제53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54조 (요금 등의 납입 의무)

-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납입의 책임을 집니다.

제55조 (요금납입의 특례)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일 경우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

서비스 요금 등의 납입 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 청구를 받지 아니

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7조 (이의신청)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납입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회사는 과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58조 (가산금의 부과)

- ① 이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 기일까지 요금(장치비 및 이용자부담 시설비를 제외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에 체납된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요금 등의 납입책임자가 주한외국공관 또는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59조 (면탈요금 등의 징수)

- ① 회사가 면탈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설비에 다른 선로, 기기 등을 연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3.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제 7 장 고객지원

제60조 (일반전용의 이용 중 장애로 인한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시간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를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 ② 이 경우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회선이용료를 반환하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합니다.

- ③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용회선의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통지 또는 알게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1조 (TV방송전용의 이용 중 장애로 인한 요금감액 및 손해배상)

- ① 이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TV방송전용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 또는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10분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회선이용료를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감액하여 드립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TV방송전용의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통지 또는 알게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2조 (불가항력)

회사는 제50조 및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에서 통신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한 통신장애를 사전 통보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제 8 장 자문위원회제도

제63조 (의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객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자문위원 위촉)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6개월이상 사용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촉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 받을 경우 성실히 자문하여야 하며 년1회 이상 회사의 서비스 전반에 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여야 합니다.

제66조 (자문위원에 대한 대우)

회사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제2호”와 같이 자문위원이 사용하는 회선사용료를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9 장 고객 제안 제도

제67조 (고객 제안)

고객은 회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회선의 품질 향상 등에 대해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안 하

실 수 있으며 그 제안이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포상 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별표1] 서비스 이용요금

가. 일반 전용회선 요금

1. 회선이용료(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① 시외전용

구분	2400bps	4800bps	9600bps	56/64Kbps	128Kbps	192Kbps	256Kbps
~ 10Km	81,900	106,400	122,800	210,000	245,000	315,000	420,000
~30Km	144,500	187,800	216,700	370,500	432,200	555,700	741,000
~50Km	201,800	262,300	302,700	517,500	603,800	776,300	1,035,100
~ 100Km	321,700	418,200	482,500	824,900	962,500	1,237,500	1,650,100
~ 200 Km	394,100	512,300	591,100	1,010,610	1,179,000	1,515,900	2,021,200
~ 300 Km	441,700	574,200	662,500	1,132,875	1,321,600	1,699,200	2,265,700
~ 400 Km	476,900	619,900	715,300	1,809,900	1,427,000	1,834,800	2,446,400
400Km ~	500,800	651,000	751,200	1,938,000	1,498,500	1,926,600	2,568,900

구분	384Kbps	448Kbps	512Kbps	768Kbps	1Mbps	1.544Mbps	2.048Mbps
~ 10Km	490,100	524,000	563,700	663,300	751,000	935,280	1,246,900
~30Km	864,500	926,000	994,500	1,170,000	1,325,000	1,649,700	2,199,600
~50Km	1,207,600	1,293,000	1,389,200	1,634,400	1,850,000	2,304,500	3,072,600
~ 100Km	1,925,100	2,062,000	2,214,600	2,605,500	2,950,000	3,673,800	4,898,300
~ 200 Km	2,358,000	2,526,000	2,712,600	3,191,400	3,614,000	4,499,900	5,998,900
~ 300 Km	2,643,300	2,831,000	3,040,800	3,577,500	4,050,000	5,044,300	6,725,700
~ 400 Km	2,854,100	3,057,000	3,283,300	3,862,800	4,373,000	5,446,500	7,262,000
400Km ~	2,997,100	3,210,000	3,447,800	4,056,300	4,592,000	5,719,400	7,625,700

구분	4Mbps	5Mbps	6Mbps	8Mbps	10Mbps	20Mbps	30Mbps
~ 10Km	2,162,000	2,620,000	2,844,000	3,293,000	3,742,000	4,990,000	6,238,000
~30Km	3,813,000	4,620,000	5,016,000	5,808,000	6,600,000	8,801,000	11,001,000
~50Km	5,325,000	6,452,000	7,005,000	8,111,000	9,217,000	12,289,000	15,361,000
~ 100Km	8,488,000	10,284,000	11,165,000	12,928,000	14,691,000	19,588,000	24,485,000
~ 200 Km	10,395,000	12,594,000	13,673,000	15,832,000	17,991,000	23,989,000	29,986,000
~ 300 Km	11,651,000	14,115,000	15,325,000	17,745,000	20,165,000	26,886,000	33,609,000
~ 400 Km	12,581,000	15,242,000	16,549,000	19,162,000	21,775,000	29,033,000	36,292,000
400Km ~	13,209,000	16,003,000	17,375,000	20,118,000	22,861,000	30,482,000	38,104,000

구분	45Mbps	50Mbps	100Mbps	155Mbps	622Mbps	1Gbps	2.5Gbps
~ 10Km	9,352,500	10,391,000	11,627,000	18,705,100	23,345,000	23,345,000	32,683,000
~30Km	16,497,000	18,330,000	20,506,000	32,994,000	41,170,000	41,170,000	57,638,000
~50Km	23,045,000	25,605,000	28,636,000	46,090,000	57,489,000	57,489,000	80,485,000
~ 100Km	36,737,500	40,819,000	45,641,000	73,475,100	91,630,000	91,630,000	128,283,000

~ 200 Km	44,998,700	49,998,000	55,896,000	89,997,500	112,218,000	112,218,000	157,106,000
~ 300 Km	50,442,700	56,047,000	62,648,000	100,885,400	125,775,000	125,775,000	176,085,000
~ 400 Km	54,465,400	60,517,000	67,650,000	108,930,900	135,816,000	135,816,000	190,143,000
400Km ~	57,193,800	63,548,000	71,027,000	114,387,600	142,594,000	142,594,000	199,632,000

※ 4M, 5M, 6M, 8M, 10M, 20M, 30M, 50M, 100M 는 Ethernet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구분		2400bps	4800bps	9600bps	56Kbps	64Kbps	128Kbps
수용구역내		43,700	56,700	65,500	131,000	131,000	144,800
수용구역외	1단계(1~6Km)	49,400	64,200	74,100	148,100	148,100	163,800
	2단계(7~12Km)	51,300	66,600	76,900	153,800	153,800	170,000
	3단계(13Km~)	53,200	69,200	79,700	159,400	159,400	176,300

구분		192Kbps	256Kbps	384Kbps	512Kbps	768Kbps	1.024Mbps
수용구역내		186,100	246,000	287,000	341,900	398,500	469,500
수용구역외	1단계(1~6Km)	210,500	278,000	324,400	386,600	450,500	530,700
	2단계(7~12Km)	218,500	288,700	336,900	401,400	467,800	551,200
	3단계(13Km~)	226,700	299,400	349,300	416,300	485,100	571,600

구분		1.544Mbps	2.048Mbps	5Mbps	10Mbps	20Mbps	30Mbps
수용구역내		586,900	745,200	1,589,000	2,013,000	2,858,000	3,523,000
수용구역외	1단계(1~6Km)	663,400	842,400	1,798,000	2,278,000	3,235,000	3,987,000
	2단계(7~12Km)	689,000	874,800	1,866,000	2,364,000	3,357,000	4,137,000
	3단계(13Km~)	714,500	907,200	1,939,000	2,456,000	4,990,000	4,298,000

구분		45Mbps	100Mbps	155Mbps	622Mbps	1Gbps	2.5Gbps
수용구역내		5,030,000	6,794,000	10,060,000	14,335,000	14,335,000	20,371,000
수용구역외	1단계(1~6Km)	5,686,000	7,688,000	11,373,000	16,206,000	16,206,000	23,029,000
	2단계(7~12Km)	5,904,000	7,977,000	11,809,000	16,827,000	16,827,000	23,912,000
	3단계(13Km~)	6,123,000	8,289,000	12,247,000	17,451,000	17,451,000	24,799,000

※ 5M, 10M, 20M, 30M, 100M 는 Ethernet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 설치비(신규설치 및 설치변경에 대한 1회 비용, 부가세 별도)

구분	요금		비고
	신규	설치 변경	
64Kbps이하	56,000원/회선	28,000원/측	○ 4선식 1회선 기준
64Kbps초과	200,000원/회선	100,000원/측	
4M,5M,6M,8M	500,000원/회선	250,000원/측	
10M,20M,30M	1,000,000원/회선	500,000원/측	
45Mbps이상	1,600,000원/회선	800,000원/측	

3. 장비임대료(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구분	장비명	단위	요금
회선종단장치	DSU	대	5,000원/월
	CSU/FDSU	대	10,000원/월

※ 상기 이외의 장비 임대료의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해 제공

4. 요금할인

1) 장기계약 할인

계약 기간	적용 할인율	비 고
1년 계약	서비스 이용료의 5% 할인 적용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시 할인반환금 부과
3년 계약	서비스 이용료의 10% 할인 적용	
5년 계약	서비스 이용료의 15% 할인 적용	

※ 계약기간 단축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기간 연장 변경 시 변경시점 익월 1월부터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하며, 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2) 다회선 사용 할인

- 동일 계약자가 시외전용회선을 5회선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할인율 5%
- 동일 계약자가 시외전용회선을 10회선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할인율 10%

※ 할인적용 기준

가. 사용중인 서비스 사용료 (설치비 및 장비임대료 제외)

나. 할인은 매월 1일 시점의 회선수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3) 고액사용자 할인

월 사용요금	할인율	비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	월 회선사용료 기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	
3억원 이상	8%	

※ 적용기준

- 요금을 감면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할인적용 가능
- 시내회선사용료와 시외회선사용료를 구분하여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
- 할인은 매월 청구요금을 기준으로 적용

4) 은행자동이체 할인(2013.5.1 부터 폐지)

-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을 은행자동이체로 신청한 고객에게 납기 내 납부한 금액의 1%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추가할인

- 2013.5.1. 기준 자동납부 이용자는 납부 방법을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할인혜택 적용

5) 예약할인

- 할인 대상 회선: 56/64Kbps 이상 시외 전용 회선
- 할인 적용 방법
 - 가. 개통희망일 1년전 신청 시: 개통 후 1년간 10% 할인
 - 나. 개통희망일 2년전 신청 시: 개통 후 2년간 10% 할인
- 신청 시 예약신청서 제출 및 첫 1개월 회선사용료의 10%를 선납하여야 하며 향후 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6) 고속급 장거리 회선 할인

- 할인 대상 회선: 56/64Kbps ~ 2.048Mbps 시외 전용 회선
- 할인 적용 방법: 사용 구간 단위별 직선거리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
- 구간 단위별 사용거리 기준 및 할인을
 - 가. 구간 단위별 사용 거리: 51Km ~ 100Km 경우 1% 할인
 - 나. 구간 단위별 사용 거리: 101Km ~ 200Km 경우 2% 할인
 - 다. 구간 단위별 사용 거리: 201Km 초과 경우 3% 할인
- 할인은 매월 1일 시점의 구간 단위별 사용 거리 기준으로 적용
- 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7) 고속 예비 회선 할인

- 할인 적용 방법: 고속회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 구간에 신청한 T1급 이상 예비 회선
- 할인 적용 방법
 - 가. 시내 회선 : 40% 할인
 - 나. 시외 회선 : 50% 할인

8) 중복 할인 적용

- 은행자동이체할인, 장기계약할인, 다회선할인, 고액사용자할인, 예약할인 및 고속급 장거리 회선 할인은 중복 할인을 허용함

5. 해제료: 계약회선 이용료 월액의 10%

6. 할인반환금: 요금할인을 받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때 해당

- 적용기준 : (할인전 월사용료 * 사용개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월 사용료는 회선이용료 및 장비임대료 포함
- 요금월 중도에 해지한 경우 : 해지월 이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개월수 에 포함

7. 요금감면표

감면대상기관 및 회선	적용기준	감면대상 요금	감면율
민방공 및 소방기관,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및 재해구제의 업무전담 기관	전화급 전용회선 이용료	30%
군사기관(미8군포함),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실, 국가정보원, 치안기관	군사, 치안기관이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국가안전 수호목적으로 이용되는 국가지도 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체신사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관 리 운영용 전용회선	체신사업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외회선 이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참여자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훈련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 영리법인 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정보이용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관련 전용회선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 하는 경 우 단, 감면 기간은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적 용일로부터 3년간 임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사관리 및 운영용 전용회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약관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정보화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초고속 국가 정보 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기간통신사업자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시내전용 회선 사용료	5%

나. TV방송전용

1. 회선 이용료(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구 분			요금	
			45Mbps	155Mbps
최소이용시간 (2시간)	최소이용료 (1단말 기준)		월 426,000	월 762,000
	누가료 (10km마다)		월 25,000	월 45,000
매월 초과 이용 시 (1시간마다)	초과이용료 (1단말기준)	1~5시간 이용	월200,000	월 350,000
		6~10시간 이용	월170,000	월 300,000
		11시간 이상	월150,000	월 270,000
	누가료 (10km마다)	1~5시간 이용	월 12,000	월 21,000
6~10시간 이용		월 11,000	월 20,000	
11시간 이상		월 10,000	월 18,000	
특정일 초과이용 (1시간까지마다)	초과이용료 (1단말기준)		시간당 13,000	시간당 23,000
	누가료 (10km마다)		시간당 900	시간당 1,600

※ 요금산정방법

○ 최소이용 2시간

- 최소이용료 : 1방향 1단말 2시간 기준

- 누가료 산정 : 단말국 사이를 거리로 10km단위마다 산정 (10km=1누가)

○ 매월 초과 이용 시 : 최소이용 2시간을 초과(매일)하여 이용시 적용

- 최소이용료 ; 1방향 1단말 1시간 기준

- 단, 마지막 시간의 요금은 30분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요금의 1/2,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요금 적용

- 누가료산정 : 단말국 사이를 거리로 10km단위 마다 산정 (10km=1누가)

○ 특정일 초과 이용 시(1시간까지마다) : 매일초과가 아닌 특정일 초과 이용 시 적용

- 1방향 1단말 기준이고 시간당으로 계산

- 누가 산정은 위와 동일

○ 유선구간은 케이블의 실제거리를 합한 거리

2. 장치비(신규설치 및 설치변경에 대한 1회 비용, 부가세 별도)

구분	적용기준	요금
1단말기준	신규, 증설 구외설변시	970,000원
	구내 설변시	290,000원

3. 기기 이용료(부가세 별도)

구분	요금	비고
TV단말설비 (1회선 1단말마다)	월 246,000원	중도해지시 일할계산

4. 할인제도

1) 동일구간 다회선 할인

- 적용: 단말설치 장소가 동일구간인 경우 회선수에 따라 적용
-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

구분	요금	할인율
동일구간 다회선할인	45Mbps기준 3~10회선까지	10%
	45Mbps기준 11~20회선까지	20%
	45Mbps기준 21~30회선까지	30%
	45Mbps기준 31~40회선까지	40%
	45Mbps기준 41~50회선까지	50%
	45Mbps기준 51회선 이상	별도

2) 은행자동이체 할인(2013.5.1부터 폐지)

-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을 은행자동이체로 신청한 고객에게 납기내 납부한 금액의 1%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추가할인 (동일구간 다회선할인과 중복적용 가능)
- 2013.5.1. 기준 자동납부 이용자는 납부 방법을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할인혜택 적용

[별표 제2호] 자문위원 할인 기준표

구 분	내 용
1. 대상	○ 5회선 이상 또는 월 회선사용료 1천만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
2. 할인적용기준	○ 통신품질 및 이용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제안을 제출하는 고객 ○ 사용회선의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고객
3. 적용할인율	○ 회선사용료의 10% 이내